

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 인용조문 수정
 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인용조문 수정
- 조례안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
 - 부패유발 방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도록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”를 “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5항 및 제6항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 및 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하며,”를 “하며, 1회에 한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<u>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 및 제10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임기) ----- -----하며, 1회에 한하여----- -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기획감사실장 김진영
연 락 처	(033)330-2206

관계 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33조 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① ~ ⑧ 생략

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